

# 인천광역시 서해구-검단구 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위탁 협약체결 고시

「지방자치법」 제168조(사무의 위탁)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사무 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. 7. 1.

##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

### 1. 관련근거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및 제168조(사무의 위탁)

### 2. 주요내용

가. 사업명 : 공동육아나눔터(검단점) 운영 사무

나. 사업방법 : 위·수탁 협약체결 및 업무수행

- 위탁자 : 인천광역시 검단구

- 수탁자 : 인천광역시 서해구

다. 위탁기간 : 2026. 7. 1. ~ 2027. 12. 31.

라. 주요내용

1) 위탁 범위 : 2026. 7. 1.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

2) 위탁 내용 :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물 일체 및 부속물,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, 이용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, 사업비 집행 및 정산·점검

### 3. 대상시설

시설명	위치	면적(㎡)	종사자	비고
공동육아나눔터 검단점	검단구 완정로 188번2길 3 검단어린이집 지하1층	165㎡ (50평)	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1명	양육 관련 정보 공유 및 프로그램 운영